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인) 

2022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준용하는 조례를 정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1조(준용)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준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회 기본조례” 준용으로 변경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4. 주요토의과제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시 논의 사항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기
본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중랑구 위원회 조</u> <u>례」</u>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	제11조(준용) ----- ----- ----- -- <u>「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기</u> <u>본 조례」</u> ----- -----.
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